

대구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가단1554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희

피고C

변론 종결2024. 11. 5.

판결 선고2024. 12. 3.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23.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년 금 제2456호로 공탁한 공탁금 39,091,123원 및 그 이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17. 4. 1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의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1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맺었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17. 4. 14. E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은 2022. 4. 8.까지 연장되었는데, 2022. 3. 1. D이 이자를 연체하면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22. 6. 23. D을 대위하여 E은행에 합계 249,926,957원을 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기금이 2022. 7. 5. 기준으로 D 및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채권액수는 합계 252,776,225원(= 대위변제금 249,926,957원 + 미수 위약금 1,063,660원 + 대지급금 1,785,608원)이다.

마. A은 2022. 1.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22. 1. 7.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2,25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 등)에서 집행법원은 2023. 11. 7.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9,087,9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대한민국은 2023. 11.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년 금제2456호로 39,091,123원을 공탁하였다.

사. 신용보증기금은 2022. 7.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이 2023. 8. 24. 파산선고를 받고(대구지방법원 2023하단10515)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인 대상 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8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 사단법인 G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은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합계 약 894,51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반면 A은 이 사건 부동산과 말리부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중 1/2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에 관한 가액이 합계 약 429,27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③ A이 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2. 5. 31. 기준 D의 자산이 144,958,689원인 반면에 부채가 979,551,158원이었던 재무상황에 비추어 보면 D의 주식은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에게만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부인의 대상이 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달리,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이미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 중 39,091,123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대한민국이 2023. 11.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년 금

제2456호로 39,091,123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세훈

별지